

의안번호	제 78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392회)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
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영은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6월 30일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임영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8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6월 30일

발 의 자 : 임영은, 이옥규, 박상돈
심기보, 오영탁, 육미선,
김기창

1. 개정이유

-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, 도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무허가·무자격 옥외광고업자를 근절하고 도민의 신체·생명·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함.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2020.12.22. 일부개정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 벽면이용 간판 표시근거 마련(안 제2조·제8조)
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, 의료시설 등이 외벽에 건물 명칭 또는 동을 표시하는 경우 세부기준 마련

-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(안 제23조)
 - 심의기간 15일에서 20일로 변경
 -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의 신청 가능
- 도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(안 제3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라. 입법예고 : 2021. 6. 16. ~ 2021. 6. 26.(10일간)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7호 중 “「건축법」”을 “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”로, “명칭 또는 동 표시”를 “주명칭 및 보조명칭(동 번호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건물의 각 1개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한다) 간”을 “한다)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이어야 하며, 간판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항공법」 제83조제4항 및 제5항”을 “「공항시설법」 제36조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1호 중 “제1항제1호·제3호부터 제6호까지,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·제3호의 규정에”를 “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·제3호, 제6조제1항제3호·제5호·제6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제2항·제3항”을 “제2항·제3항 및 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

호 후단 중 “간판”을 “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 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제4호·제4항제2호”를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.

가. 주명칭은 세로 2.4미터 이내,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

나. 보조명칭은 세로 2.0미터 이내,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

다. 도료·천·종이·비닐·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라.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.

마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·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0조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3호 중 “아치는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래 부분까지의 높이가”를 “아치 기둥의 길이는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4호를 삭제한다.

제21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23조제4항 본문 중 “15일(소위원회는 10일)”을 “20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1회에 한정하여 15일(소위원회는 10일) 이내에서”를 “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⑩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.

제25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.

제27조제3항 중 “별지 제6호서식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,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의무) 옥외광고물의 설치·관리에 관하여 도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 책임

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별표 1의 “「항공법」”을 “「공항시설법」”으로, “「철도법」”을 “「도시철도법」”으로, “공설화장장·공설납골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묘지”를 “공설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·법인묘지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의 “가로 7cm”를 “가로 5cm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동주택 벽면 이용 간판의 적용례) 제8조제1항제5호는 이 조례시행 후 표시·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[별표 1]

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(제21조제3항 관련)

구 분	시설의 종류
산업·교통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일반·도시첨단산업단지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-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물류터미널 -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-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공항 - 「항만법」에 따른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 - 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역 -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노외주차장 -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(대형승합차 10대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시설에 한함) 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
관광·휴양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지 - 「온천법」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원지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규모 1만㎡ 이상의 공원 -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시·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건축물, 사적지, 명승지 등 관광명소 -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전문휴양업,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- 개별법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- 「관광진흥법」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「공연법」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
공공·공용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·문화체육시설(도서관, 시민회관, 종합운동장 등) -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에 따라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- 종합사회복지관 - 「사회복지법」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또는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- 대사관,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- 「장사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설묘지·공설화장시설·공설봉안시설·법인묘지 -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-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-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, 성당, 교회,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이 500㎡이상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체육시설 -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텔 -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- 「주택법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
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(제31조제3항 관련)



※ 시·군 계획에 따라 도와 협의 후 변경사용 가능

-
- 비고
1. 표시규격 : 가로 5cm × 세로 5cm
 2. 표시내용 : '2012'는 허가·신고 연도 표시,
'10001 또는 20001'은 일련번호(허가1, 신고2) 표시
-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간판의 총수량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「건축법」에 따른 공동주택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<u>명칭 또는 동 표시</u></p> <p>8. (생략)</p> <p>제5조(옥상간판의 표시방법)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옥상간판(이하 이 조에서 “간판”이라 한다)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(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</p>	<p>제2조(간판의 총수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<u>주명칭 및 보조명칭(동 번호 및 상징형도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건물의 각 1개</u>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옥상간판의 표시방법)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라 옥상간판(이하 이 조에서 “간판”이라 한다)을 <u>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이어야 하며, 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(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낮은 부분으로 한다)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「항공법」 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낮은 부분으로 한다)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「공항시설법」 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.</p>
<p>④·⑤ (생략)</p> <p>제6조(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) ①·② (생략)</p>	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 (생략)</p> <p>1. 제1항제1호·제3호부터 제6호까지,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·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·제3호, 제6조제1항제3호·제5호·제6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
<p>2. (생략)</p>	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) ① (생략)</p>	<p>제8조(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1.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가. <u>제2항·제3항</u>에 따른 간판</p> <p>나. ~ 마. (생략)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가. <u>제2항·제3항 및 제4항</u>에 따른 간판</p> <p>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가. <u>주명칭은 세로 2.4미터 이내,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</u></p> <p>나. <u>보조명칭은 세로 2.0미터 이내,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</u></p> <p>다. <u>도료·천·종이·비닐·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(생략)</p> <p>1. 건물의 가장 높은 층(옥상난간을 포함한다)의 3면의 벽면에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·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</p>	<p><u>위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라.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.</u></p> <p><u>마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·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건물의 가장 높은 층(옥상난간을 포함한다)의 3면의 벽면에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·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하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는 하나의 간판. 이 경우 <u>간판의 가로크기</u>는 3미터 이내,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.</p> <p>2. <u>제1항제4호·제4항제2호</u>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.</p> <p>가.·나. (생략)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제10조(공연간판의 표시방법) (생략)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,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. <u>다만,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표시면적이 12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.</u></p>	<p>나의 간판. 이 경우 <u>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</u>는 3미터 이내,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.</p> <p>2. <u>제1항</u>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.</p> 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공연간판의 표시방법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며,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. <u><단서 삭제>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4.·5. (생 략)</p> <p>제16조(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) (생 략)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3. <u>아치는 도로를 횡단하는 구조물의 아래 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u></p> <p>4. ~ 6. (생 략)</p>	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아치 기둥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/u>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(생 략)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<u>성명·주소·상호·상표·전화번호·영업내용 또는 상징형</u>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17조(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21조(표시방법의 강화)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시장·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,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 심의</p>	<p>제21조(표시방법의 강화)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5조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해당 시장·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,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u>이 경우 시장·군수는 이해관계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특정구역 지정관련 사항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.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23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도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<u>15일(소위원회는 10일)</u>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<u>1회에 한정하여 15일(소위원회는 10일)</u>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⑤ ~ ⑨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<u><후단 삭제></u>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3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도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<u>20일</u>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「<u>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⑤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⑩ <u>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5조(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) (생략)</p> <p>1. <u>제8조제4항제2호의 벽면이용 간판</u>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제27조(광고물 실명제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실명제 표시는 <u>별지 제6호서식</u>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·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·신고번호, 위치, 규격, 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, 그 밖에 시장·군수가 정하는 사항</p>	<p><u>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해야 한다.</u></p> <p>제25조(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)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제></p> <p>1.·2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</p> <p>제27조(광고물 실명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실명제 표시는 <u>별지 제2호서식</u>의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·전자적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·신고번호, 위치, 규격, 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, 그 밖에 시장·군수가 정하는 사항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항으로 한다.</p> <p>④·⑤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33조(시행규칙)</u> (생 략)</p>	<p>으로 한다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3조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의무) 옥외광고물의 설치·관리에 관하여 도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34조(시행규칙)</u> (현행 제33조와 같음)</p>
	<p><u>부 칙</u></p>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제2조(공동주택 벽면 이용 간판의 적용례)</u> 제8조제1항제5호는 이 조례 시행 후 표시·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(2020.12.22. 일부개정)

제3조(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)

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·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·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의2(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)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·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·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1. 허가·변경허가의 신청: 10일
2. 신고·변경신고: 5일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·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·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(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)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의무화와 상위법령 및 타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